공청회 자료 2002-5

미신고시설의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일시: 2002년 3월 12일 (화) 14:00 - 17:0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본관 2층)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보 건 복 지 부

■ 진 행 순 서■

□ 14:00~14:15 등 록

□ 14:15~14:30 개회인사
정경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14:30~15:00 주제발표
좌장: 조남훈(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단장)
발표: 미신고시설의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임연구원)

□ 15:00~16:30 토 론
임석근 (담안선교회 성애원 혼합시설 원장)
한병용 (만민동산 노인시설 원장)
김통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 감사)
이현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장)
정무성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렬 (경기도 화성시 사회복지과장)
조동진 (서울시 사회복지과 사무관)
조진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이상 토론자 순)

□ 16:30~17:00 종합토론
진행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

〈 차례 〉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4

Ⅱ.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이론적 고찰 5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설치기준 5
2. 시설의 설치기준 6
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설치기준 8
4. 사회복지시설의 수 및 생활인수 14
5.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발생배경 14
6.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존속이유 16
7.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한계 17

Ⅲ.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조사결과 20
1. 미신고시설 일반현황 20
2. 이용자 특성 25
3. 시설현황 28
4. 재정현황 30
5. 인력현황 33
6. 신고 의향 35
7. 타시설과의 관계 38
8. 미신고시설의 문제점 40

IV.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개선방안 43
1. 시설 양성화 및 재정적 지원 43
2. 시설의 단일화 추진 44
3. 프로그램 확충 44
4. 시설의 개선 45
5.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46
6. 미신고 시설 발생 예방 46
7.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 47

V. 결론 48

참고문헌 49

〈 표차례 〉

<표 I-1> 실태조사의 조사지표 3
<표 II-1> 법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8
<표 II-2> 신고 및 미신고 시설 증가 추이 16
<표 III-1> 신고 및 미신고 시설 비교 21
<표 III-2> 미신고 시설의 유형 22
<표 III-3> 혼합시설의 유형 및 분포 23
<표 III-4> 지역별 시설분포 24
<표 III-5> 생활인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비율 26
<표 III-6> 생활인 수의 분포 27
<표 III-7> 2000년도 평균 수입 및 지출 내역 31
<표 III-8> 부채 유무 32
<표 III-9> 부채를 갖게 된 이유 32
<표 III-10> 종사자 연봉액 비교 34
<표 III-11> 종사인력의 충분성 34
<표 III-12> 신고시설로 전향의향 35
<표 III-13> 신고시설로의 미전향 이유 36
<표 III-14> 신고시설로의 전향 곤난 이유 37
<표 III-15> 신고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견해 37
<표 III-16> 미신고 시설의 어려운 점 38
<표 III-17> 가장 원하는 지원분야 39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 이로써 기존에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려 하였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사회복지시설이 신고제로 바뀐 후에도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김복일, 2000).

— 1996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의 36% 정도가 미신고 사회복지수용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 최근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중 상당수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집계되어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음.

— 미신고시설은 공식적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그런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와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부족한 상태임.

— 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중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하 하였음.

첫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둘째, 미신고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셋째, 미신고 시설의 제도화 및 양성화 방안 등 개선 방안 마련

2.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하였음.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각 시설의 신고 기준을 알아보았음.

— 두 번째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 파악으로 시설일반현황, 시설현황, 재정현황, 인력, 신고의향 타시설과의 관계, 요망사항 등을 살펴보았음(<표 I-1> 참조).

— 마지막으로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여기에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방향 설정,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방안 검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방안 제시가 포함됨.

<표 I-1> 실태조사의 조사지표

구분	중지표	소지표
일반 현황	일반 현황	- 미신고시설 수 및 생활인 수 - 시설 유형 - 시설 설립 연도 - 시설설립 배경 - 운영주체(법인, 개인, 종교단체 등) - 주요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	- 보호대상자 수 (성, 연령, 국민기초보장 수급 여부) - 연령별 장애인 수 (등록 및 미등록) - 연고자 여부 - 대상자 입소 경로 - 평균 입소기간
시설 현황	시설 및 설비	- 시설규모, 방수, 입실구조 - 시설 내부 구성: 상담실, 거실, 목욕실, 도서실 등 - 건물 소유형태, 건물 허가여부, 건축시기 - 시설 소재지 및 지역의 특성 - 시설의 안전성 - 편의시설 구비 정도
재정 현황	재정 규모 및 재원	- 재정규모(수입 및 지출) - 재원 및 구성: 재원 중 후원금의 비율 및 정부보조금 비율 - 수익사업 여부 - 후원자 규모 및 후원액 - 1인당 최저 생활비 - 부채 여부 - 재정에 대한 만족정도
인력 현황	시설장	- 일반사항: 성, 연령, 종교, 학력 - 자격증 유무, 종사기간
	종사자	- 종사자 수: 정규직, 임시직 (성) - 주 근무 형태, 월평균 임금 - 인력의 충분성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수, 연인원, 참여빈도 - 자원봉사활동 영역 - 자원봉사자 충분성
신고 의향	미신고 이유 및 신고 의향	- 향후 신고 의향 - 미신고 이유 - 신고시 가장 어려운 점 - 현 법정 신고 기준에 대한 견해 - 어려운 점, 좋은점
타시설과의 관계	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타 복지시설과의 연계여부 - 지역주민의 인식 -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원수혜 여부
	행정기관과의 관계	- 일선행정기관과의 관계 - 지원 요망 분야 및 지원 내용
요망사항	건의사항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건의 사항

3.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역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문헌연구임.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역할 검토하였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존 문헌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하였음.

— 두 번째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미신고 시설명단을 사용하여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총 수거된 설문지는 813부 중 731부로 설문 회수율이 89%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거율을 보이고 있음. 이중 이용시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이중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포함시켜 총 647개소가 분석의 대상임.
- 응답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통해서 시설 현황 파악하였음.

— 아울러 미신고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을 위해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음.

- 연구진 3인과 보건복지부 직원 4인이 4팀을 구성하여 총 미신고시설 19개소(팀당 5개소)를 방문하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시설의 여건을 파악하였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전문가, 시설 관련자, 보건복지부 공무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음.

II.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설치기준

가.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③에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Goffman(1961)은 사회복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를 어떤 특수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제력을 갖춘 사회적 제어장치라고 정의함.
- 미국의 NASW(1987)의 사회복지사전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회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나 시설로 규정함.
- 이영희(1996: 59)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심신의 미발달이나 미성숙, 장애 혹은 노화 등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피하거나 자립이 곤란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부양기능을 대신하는 시설이나 설비 및 직원 운영조직'이라고 함.

—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사회문제를 갖게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들은 ① 클라이언트 중심적이어야 하고, ② 조직구조가 탄력성이 있어야 하며, ③ 전문적인 조직이 되어야 함.

나. 사회복지시설의 변천

— 사회복지시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설의 형태와 보호의 내용이 변화되어 오고 있는데, 그 변천과정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음(박태영, 1995).
  • 첫째, 사회방위적 단계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억압과 격리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던 시기임.
  • 둘째, 사회보장적 단계로서 시설보호는 최저생활의 보장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시설생활자가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의 집단시설에서 단독주택(cottage)형태의 시설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임.
  • 셋째, 사회복지적 단계로서 사회복지시설은 보호의 연속체(care continuum) 안에서 하나의 선택 대상으로 기능 하게 됨.
— 현재 우리 나라의 시설보호는 수급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둘째 단계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시설의 설치기준

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은 1998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 동 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단, 정신요양시설과 교호시설은 개인은 불가능하고,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시설의 설치 기준이 충족된 후 개인이 시설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되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 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1부

나. 시설 설치기준 및 필요서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또한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시감독과 주기적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은 이후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각 법의 하위에 있는 시행규칙에 따로 명시되었음.

다. 시설의 개선, 정지, 폐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이 되지 않아 시설이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은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할 수 있음.

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설치기준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설치기준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음.

- 법상으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사업을 하는 시설들을 포함함(표 II-1 참조).

<표 II-1> 법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 종류
아동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노인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4)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시설
여성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부랑인보호시설(성인, 아동)

자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정신보건법, 부랑인복지시설 운영규칙

가. 노인시설

1) 노인복지의 이념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뉨(노인복지법 제31조).

3) 노인시설의 설치 및 기준

— 노인시설의 설치기준은 시설의 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배치기준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2.: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 입소정원 10인이상

(2) 유료양로시설 : 입소정원 5인이상

(3) 실비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복지주택 : 30세대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 채광 · 환기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 · 화장실 · 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화재등 비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의 이념

—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동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이 있음(아동복지법 제16조).

3)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 아동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음.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있어서는,
첫째,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
둘째, 다음의 설비를 갖출 것(다만,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거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이라고 하였음.
여기서 필요한 설비에는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이 포함됨.

4) 종사자 관련 사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법 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함[[시행일 2000.7.13]].

• 아동복지종사자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그 직종과 수, 자격 기준도 법에 명시되어 있음[법 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시행일 2000.7.13]].

다.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의 이념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2)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포함됨.

3) 장애인복지시설의 기준 및 설비

—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지조건으로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장애인시설의 규모는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다만, 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은 예외로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 성별 ·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함.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음.

라. 모자복지시설

1) 모자복지의 이념

— 모자가정이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여성과 18세 미만(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함.

• 모자가정이 자립 ·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9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음(박태영, 2000).

2) 모자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 모자복지시설의 종류는 모자복지법 제19조에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등으로 규정됨.

3) 시설의 기준

— 모자복지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모자복지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성질별 · 성별 · 연령별 특성에 맞도

록 하여야 하며, 일조 · 채광 ·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 재해방지 등을 참작하여야 함.

• 모자복지시설에 필요한 설비로는 거실, 사무실, 교양교육실, 의무실, 상담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산후회복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탕, 세탁장 및 건조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 시설 등임.

마. 부랑인시설

1) 부랑인보호의 이념

—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를 말함(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제2조).

• 이들의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을 법적으로 두게 되었음.

2) 부랑인보호시설의 설치기준

— 부랑인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제11조에 제시되어 있음.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제11조(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1.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입소정원 1인당 면적을 15.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입소정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갖출 것

   시설 면적=15.48제곱미터×100+15.48제곱미터×0.7(입소정원-100)
3.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침실의 면적은 원생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남 · 녀별, 장애별로 구분하여 보호할 것
5. 정신질환자 · 알콜중독자 및 전염병환자 등은 격리하여 수용할 것

4. 사회복지시설의 수 및 생활인수

— 사회복지생활시설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1985년에는 총 생활시설수가 588개소이었는데, 1990년에 664개소, 1995년 778개소, 2000년에 879개소로 증가하였음.

— 생활인 수는 지난 15년간 약간의 변동을 보여 1985년 7만3천여 명에서 1990년 8만명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1995년 이후 7만6천여 명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7만8천여 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시설 현원은 정원을 밑돌고 있어 아동시설 67.9%, 노인시설 68.6%, 정신요양시설 92.0%, 부랑인시설 95.1% 등임. 각 시설에 있어 생활인수가 정원을 밑돌고 있는 이유는 입소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임.

5.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발생배경

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들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함.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를 수용·보호함으로써 제도권 내의 신고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점차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뿐 아니라, 개별적 복지의 문제를 민간부분이 스스로 담당

함으로써 국가의 복지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제임.

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발생배경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우리 나라의 복지환경의 특수성으로부터 비롯한 국가적 측면과 시설의 운영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1) 국가적 측면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환경:
  • 첫째, 1980년대부터 시설의 설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허용기준은 현실보다 높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산을 가져오게 되었음.
  • 둘째, 국가의 정책 또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양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대형화가 추구되고 있었으며, 재정지원방법에 있어서도 생활인원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시설의 대형화가 추구되었음. 이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미신고시설화 하였음.
  •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지연되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함.
— 이러한 복지여건은 1990년대 이후 복지욕구에 대한 증가와 함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산도 함께 가져왔음.

2) 시설운영자 측면

— 민간인 시설보호사업의 운영이 처음부터 복지시설 본래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자선과 봉사로서 시작된 후 복지시설로 된 경우가 많음.
  • 경제적 한계로 시설 생활자 인원의 증원, 시설의 환경개선이나 규모를 확

대하지 못하고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6.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존속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2001년도 현재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파악된 시설은 637개소임(이 중 4개소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임).

— 시설의 증가비율을 보면 신고 시설은 1995년 778개소에서 2000년 879개소로 13%만 증가하였는데, 미신고 시설은 1996년 283개소에서 2001년 637개소로 무려 125%나 증가하였음. 미신고 시설의 증가폭은 신고시설의 증가폭의 약 10배임(표 II-2 참조).

<표 II-2> 신고 및 미신고 시설 증가 추이

(단위: 개소, %)

구 분	1995/1996년	2000년/2001년	증가비율
신고시설	778 (1995년)	879 (2000년)	13
미신고 시설	283 (1996년)	637 (2001년)	125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방안, 2001.(신고시설).; 변용찬 외,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미신고 시설,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2001.(미신고 시설, 2001).

주: 신고시설은 생활시설만을 포함하고, 미신고 시설은 생활시설(633개소)과 장애인 보호작업장(4개소)을 포함하고 있다.

— 미신고 시설이 존속하는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 우선, 법적 측면에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운영자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받게 되어 있는

데, 미신고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로서 열악한 시설환경, 영세한 자본, 전문 인력 등의 부재로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 신고를 꺼리는 면도 있음. 아동소공동체의 경우 신고에 따른 '행정적 규제와 감독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46.4%로 나타났음.

- 시설생활자 측면에서는 신고 사회복지시설에로의 입소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신고 시설이 존속함. 아울러 신고시설이 지역간에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군지역 등지에서는 미신고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7.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한계

가. 재정의 영세성 및 재정 조달의 한계

— 최해경(1997)의 조사에 따르면, 재정규모에 있어서도 미신고 시설은 1년 지출액이 3천 만원 미만이 50%이상 차지하고, 1억원 미만이 90%이상 차지하고 있어 재정이 영세하다고 함[1].

- 이러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이 영세한 원인은 재정조달이 어렵다는데 있음.
- 미신고 시설에 들어오는 재원은 자체수입, 민간보조 및 외원보조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부터는 제외됨.

— 이러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다른 문제점, 즉 시설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프로그램 실행의 곤란 등을 수반하여 악순환을 겪음.

나. 시설의 미비

1) 신고시설은 1-3억(31.6%), 3-5억(19.4), 5-10억(16.8%), 10억 이상도 8.4%를 차지하고 있어 미신고 시설보다 재정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음.

— 미신고 시설은 시설 안전성과 시설의 미비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됨.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시설 및 건축물은 가정집이나 교회시설물, 불법건축물, 버려진 축사, 비닐하우스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로 나타나고 있었음.

— 아울러 시설내의 편의시설로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함.

다.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 재정의 한계는 시설설비의 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시설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수반함.

- 변용찬외(1996)의 연구에 의하면 종사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는 4.9%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입소자가 비전문인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 한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중 무급 종사자가 많고, 임금을 받고 있는 종사자라 하더라도 평균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라. 운영의 불투명성 및 인권문제

— 미신고 시설의 다른 문제점은 시설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생활인의 권익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임

- 시설이 개방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 생활인들이 지급받는 생계 급여 등의 사용에 대해 시설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시설이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후원을 받기도 쉽지 않음.
- 생활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도와 감독 밖에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거의 불가능함.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대상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어려움.

III.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조사결과

1. 미신고시설 일반현황

가. 미신고 시설 수

ㅡ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파악가능한 미신고시설을 전수조사하였음(생활시설: 총 647개소)

- 생활인 수는 13,856명에 이르고, 시설당 평균 생활인수는 평균 21.79명으로 집계되었음(표 III-1 참조).
- 신고시설은 2000년 현재 전국에 879개소가 있고, 생활인원은 78,625명에 이름. 이로써, 미신고 시설은 시설수에 있어서 신고에 비해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님을 알 수 있고, 생활인수에 있어서는 신고시설의 약 17.6%에 이르고 있음. 미신고 시설은 신고시설보다 시설당 인원이 적음.

<표 III-1> 신고 및 미신고 시설 비교

(단위: 개소, 명, %)

구 분	신고시설 (2000년)			미신고시설 (2001년)		
	시설수	생활인수	평균 생활인수	시설수	생활인수	평균 생활인수
아동청소년시설	269	17,720	65.87	77	1,001	12.80
노인시설	250	13,907	55.63	124	2,015	16.38
장애인시설	196	17,257	88.05	189	3,670	19.42
여성시설	59	3,137	53.17	5	49	9.80
정신요양시설	55	12,676	23.05	3	53	17.67
부랑시설	45	13,062	290.27	3	150	50.00
노숙자시설	-	-	-	3	85	28.33
결핵나장애시설	5	866	173.20	8	160	30.30
혼합시설	-	-	-	212	6,238	29.42
기 타	-	-	-	13	372	28.62
전체	879	78,625	89.45	637	13,856	21.79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방안, 2001(신고시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2001(미신고 시설).

주: 노숙자시설은 권무 미신고시설이나, 대부분의 시설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미신고 노숙자시설은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을 말함.
미신고 장애인시설에는 이용시설인 보호작업장 4개소를 포함시켰음.

나. 미신고 시설 유형

— 미신고 시설을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여러 대상을 같이 보호하고 있는 혼합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212개소, 33.3%)(표 III-2 참조). 그 다음이 장애인시설 29.7%(187개소), 노인시설 19.5%(124개소), 청소년시설 4.6%(48개소), 아동시설 4.6%(2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2> 미신고 시설의 유형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퍼센트
노인시설	124	19.5
아동시설	29	4.6
청소년시설	48	7.5
장애인시설	189	29.7
모자부녀시설	5	0.8
정신요양시설	3	0.5
부랑인시설	3	0.5
노숙자시설	3	0.5
결핵시설	5	0.8
나장애인시설	3	0.5
혼합시설	212	33.3
기타시설	13	2.0
계	637	100.0

— 혼합시설인 경우, '노인+장애인시설'이 66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노인+아동+장애인시설'이 38개소였음(표 III-3 참조). 그 다음은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로 17개소이었고, '아동+청소년시설'이 12개소이었음.

• 즉, 대부분의 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을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III-3> 혼합시설의 유형 및 분포

(단위: 개소)

구분	빈도
노인시설 + 장애인시설	66
노인시설 + 아동시설 + 장애인시설	38
노인시설 + 아동시설 + 청소년시설 + 장애인시설	17
아동시설 + 청소년시설	12
노인시설 + 청소년시설 + 장애인시설	7
노인시설 + 장애인시설 + 정신요양시설	6
아동시설 + 청소년시설 + 장애인시설	6
아동시설 + 장애인시설	6
노인시설 + 아동시설	4
노인시설 + 장애인시설 + 기타시설	4
노인시설 +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 노숙자시설	4
노인시설 + 노숙자시설	4

다. 지역별 미신고 시설 분포

— 지역별 미신고 시설의 분포에 있어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31.6%(201개소)이고, 다음이 서울시 120개소(18.8%), 강원 57개소(8.9%), 경북 39개소(6.1%)의 순임(표 III-4 참조).

<표 III-4> 지역별 시설분포

(단위: 개소, %)

구분	노인시설	아동시설	청소년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자	결핵시설	나장애인	혼합시설	기타시설	전체
서울	18	14	17	36	3	-	2	3	-	-	18	9	120 (18.8)
부산	1	2	2	3	-	-	-	-	-	-	3	1	12 (1.9)
대구	-	-	2	1	-	-	-	-	-	-	4	-	7 (1.1)
인천	7	1	3	8	1	1	-	-	-	1	10	-	32 (5.0)
광주	1	-	2	12	-	-	-	-	-	-	4	1	20 (3.1)
대전	1	-	2	4	-	-	-	-	-	-	5	-	12 (1.9)
울산	-	-	-	-	-	-	-	-	-	-	1	-	1 (0.2)
경기	46	7	11	63	1	-	1	-	4	1	66	1	201 (31.6)
강원	16	2	4	11	-	1	-	-	-	-	23	-	57 (8.9)
충북	5	-	2	9	-	-	-	-	-	-	13	1	30 (4.7)
충남	10	1	-	11	-	-	-	-	-	-	11	-	33 (5.2)
경북	5	1	1	6	-	-	-	-	-	1	25	-	39 (6.1)
경남	1	-	1	5	-	1	-	-	-	-	4	-	12 (1.9)
전북	6	1	-	8	-	-	-	-	-	-	19	-	34 (5.3)
전남	7	-	1	8	-	-	-	-	1	-	5	-	22 (3.5)
제주	-	-	-	4	-	-	-	-	-	-	1	-	5 (0.8)
전체	124	29	48	189	5	3	3	3	5	3	212	13	637 (100.0)

라. 설립시기

— 조사된 미신고 시설 637개소 가운데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된 시설은 5.4%(34개소), '80년대 26.9%(169개소), '90년대 67.6%(424개소)로 1990년대 이후 미신고 시설의 수는 더욱 급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 운영동기

— 운영동기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가 42.7%(2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인 이유'가 29.9%(172개소),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어서' 21.4% (123개소)로 나타났음.

바. 운영주체

— 운영주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55.4%(342개소)로 절반 이상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또한 '종교기관'이 31.0%로 대부분 개인 혹은 종교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 주요 프로그램

— 시설의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수용보호 63.3%, 기타 36.0%, 수용보호만 제공 13.1%, 일시보호 15.3%로 주로 일시보호 및 수용보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용보호 외에 약물치료 13.0%, 물리치료 8.2%에 불과함.

2. 이용자 특성

가. 생활인의 연령별, 성별 구성

— 연령별로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34.2%로 나타났음. 0-12세 9.6%, 13-17세 8.1%, 18-35세의 19.1%, 36-64세 29.0%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자 45.8%, 여자 54.2%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많았음.
-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6.4%로 남자 17.4%보다 월등히 높은데 비해, 그 외의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총 6,286명으로 집계되었음.

— 전체 생활인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0%인 경우가 8.9%, 100%인 경우는 12.1%였고, 21%에서 80%의 범위에 54.6%의 분포를 보임(표 III-5 참조).

- 생활인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평균 51.3%로, 생활인의 약 반은 수급자임. 수급자 가운데 남자 47.5%, 여자 52.5%로 여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표 III-5> 생활인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비율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퍼센트
0%	56	8.9
1-10%	41	6.5
10-20%	46	7.3
21-40%	128	20.4
41-60%	109	17.4
61-80%	106	16.9
81-99%	66	10.5
100%	76	12.1
계	628	100.0

주: 평균 - 52.3%

— 미신고 시설의 생활인 수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가장 많은 유형이 11-20인의

소규모의 시설로 33.2%가 해당되었음(표 III-6 참조).

- 그 다음은 21-50인의 중규모 시설로 28.9%, 6-10인 시설 23.7%의 순임. 최소규모인 0-5인의 시설은 전체의 7.4%에 달하고, 51-100인의 중대규모 시설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101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도 7개소(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인은 시설당 평균 21.79명(표준편차 21.48)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III-6> 생활인 수의 분포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퍼센트
0 - 5인	47	7.4
6 - 10인	151	23.7
11 - 20인	211	33.2
21 - 50인	184	28.9
51 -100인	36	5.7
101인 이상	7	1.1
계	636	100.0

나. 등록 및 미등록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은 6,156명으로 파악되어 시설 총인원 13,856명의 약 44.4%로 추정됨

— 장애인 가운데 등록된 장애인은 77.4%(4,766명)인데 비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약 22.6%(1,390명)나 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이 요구됨.

- 등록장애인이나 미등록 장애인이나 18세 이하보다 18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월등히 높아 後天的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다. 입소경로

— 시설입소경로는 연고자 또는 주위사람의 의뢰에 의해 입소한 경우가 56.1%를 차지하고 있어 미신고 시설 구성원의 약 절반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입

소함을 알 수 있음. 그 외에 종교단체 의뢰가 23.2%, 본인의 자진입소 7.3%의 순으로 파악되었음.

라. 연고자 비율

— 시설의 생활인중 연고자가 있는 비율은 전체의 88.5%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연고자가 있었음.

마. 평균입소기간

— 평균입소기간은 1-3년이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5년 27.1%, 6-9년 21.7%순이었음. 1년 미만은 5.9%, 10년 이상도 1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시설현황

가. 시설의 규모

— 대지는 50평 미만이 9.0%로 100평 미만의 규모인 시설이 전체 응답시설의 33.3%, 50평에서 100평이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00평 이상의 비교적 대지를 갖는 시설도 1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평의 경우 30-39평이 1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방수의 경우, 4-6개가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이 7-9개 20.1%, 1-3개도 18.0%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입실구조의 경우, 2인 1실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3인 1실 27.7%, 4인 1실 15.9%로 나타났음.
— 종합하면 조사된 미신고 시설의 평균 대지평수는 638.93평, 평균 건평 110.14평, 평균 방의 개수는 9.3개, 평균 입실구조는 3.19명당 1실이었음.

나. 구비된 설비

— 시설 중 화장실은 97.0%가, 조리실은 91.0%가 구비되어 있고,
  • 그 외 생활 필수시설로서 목욕실은 89.9%, 거실 85.4%, 세탁실은 79.1% 만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시설로서 도서실, 오락실, 양호실, 상담실 등은 조사시설의 10-20% 정도만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편의시설 구비 정도

— 편의시설 충분성은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충분) 가운데 평균 2.6으로 부족한 편이었음.

라. 건물 소유형태 및 허가 여부

— 건물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6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전세 12.2%, 월세 9.9%의 순으로 나타났음.
— 허가건물이 전체 응답시설의 85.2%가 허가된 건물이었으나 무허가 건물도 14.8%나 되었음.

마. 시설 형태

— 미신고 시설의 시설형태는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가 70.7%를 차지하여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신고시설과 유사한 전형적인 시설'은 17.0%로 소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바. 건축시기

— 시설이 건축된 지 3-9년 지난 비율이 40.1%로 가장 많았고, 10-19년 32.0%, 20년 이상 19.4%의 순이었음.

사. 지역의 특성

— 미신고 시설의 지역 규모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45.8%(292개소)가 중소도시에 소재해 있었고, 그 다음이 대도시로 31.2%(199개소), 군지역도 22.9%(146개소)나 되었음.
— 미신고 시설이 있는 지역의 특성은 농촌지역이 41.1%(258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일반 주택가 지역으로 38.3%(240개소)로 나타났음. 외딴지역이나, 공단, 상가지역 등에 소재한 시설은 소수였음.

아. 시설의 안전성

—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안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64(표준편차 0.95)로 안전한 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11.3%의 시설은 불안전하다고 지적하여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4. 재정현황

가. 2000년 수입과 지출내역

— 2000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사 한 결과 총 637개의 조사대상가운데 476개의 시설이 응답하였고, 각 항목별로 응답자 수의 차이가 있었음(표 III-7 참조).
— 수입 총액 평균은 약 1억1천1백여 만원(자체부담금, 정부지원금, 국민기초생활급여, 투자수익금, 후원금, 기타의 평균 금액을 합친 액수임)으로 조사됨.
  • 수입원을 보면, 후원금 26.7%, 자체부담금 19.8%, 국민기초생활급여 19.7%, 투자 수익금 10.7%, 정부지원 10.6%의 순으로 후원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

음. 기타 수입은 수입총액의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도 한해 지출 평균은 약 8천1백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지출 총액가운데 생계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31.7%로 나타남. 인건비는 29.5%, 관리운영비는 25.0%로 지출 총액의 절반 이상이 시설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I-7> 2000연도 평균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개소, 원, %)

구분		응답 시설수	평균	비중	표준편차
수입	총 액	476	111,879,516	100.0	846961.19.94
	자체부담금	300	22,217,391	19.8	31441211.38
	정부지원금	78	11,832,383	10.6	2571.0013.35
	기초생활급여	368	22,142,670	19.7	25397383.05
	투자수익금	58	11,952,835	10.7	24322798.79
	후 원 금	426	29,913,458	26.7	64332436.42
	기 타	165	13,820,779	12.4	26487566.34
지출	총 액	461	81,347,104	100.0	7941.71.91.27
	관리운영비	450	20,355,516	25.0	33658965.57
	생 계 비	455	25,813,579	31.7	36626890.67
	인 건 비	283	23,986,971	29.5	3761.2547.32
	기 타	267	11,191,038	13.8	1.9855591.80

나. 수익사업 시행여부, 후원자 수, 월 평균 생활비

—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시설은 68.4%로 상당수의 시설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반면, 31.6%의 시설은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간 후원자 수는 1-20명이 가장 높은 비율인 34.8%(165개소)로 나타났고, 100명 미만이 68.1%로 월 평균 후원자 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00명 이상 후원자가 있는 시설은 전체의 28.8%로 나타났음.

— 1인당 월 평균 생활비는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50만원으로 응답하였고, 월 평균 생활비는 1인당 약 23만원(표준편차:12.76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다. 부채현황

— 시설에서 부채를 갖고 있는 시설은 256개소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여 과반수 미만의 미신고 시설이 부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III-8 참조).

<표 III-8> 부채 유무

(단위: 개소, %)

부채유무 \ 운영주체	개인	재단	종교단체	임의, 기타	전체
부채 있음	54.8	14.3	29.3	56.9	45.1(256)
부채 없음	45.2	85.7	70.7	43.1	54.9(311)
계	55.4 (314)	4.9 (28)	30.7 (174)	9.0 (51)	100.0 (567)

주: χ^2=42.975*** ***p<.001

— 부채를 갖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시설증·개축을 위해'가 56.5%로 가장 많아 미신고 시설의 시설 증개축의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음(표 III-9 참조). 다음이 운영비 부족 16.2%, 생계비 부족 3.7%, 인건비 부족 2.8%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9> 부채를 갖게 된 이유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율
시설의 증·개축을 위해	122	56.5
운영비 부족으로	35	16.2
인건비 부족으로	6	2.8
생계비 부족으로	8	3.7
기타	45	20.8
전 체	216	100.0

라. 재정의 충분성

— 재정의 충분성 정도에 대해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충분하다는 시설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5. 인력현황

가.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장은 52.4%가 남성, 46.2%가 여성으로 남성이 약간 더 많았음.
— 연령층으로는 40세 이상 50대 미만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7.3%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시설장의 학력은 36.8%가 대재/대졸이었고, 24.8%가 대학원 졸 이상으로 높은 평균 학력을 보이고 있었음.
— 종교는 기독교 60.7%, 천주교 33.8%로 전체 기독교가 94.5%를 차지하며, 불교 3.9%를 차지하였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 포함)을 소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3.8%(88명)에 불과하였음.
  • 무응답이 59.8%(381명)로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응답율보다 더 높은데 무응답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 않았을 확률이 높음.
— 1990년 이후 2000년 이전에 시설장이 된 경우가 68.2%로 가장 많았으며 1980년 이후 1990년 이전이 18.3%로 비교적 적은 수 였음.

나. 종사자

— 종사자 수: 한 시설에 정규직 종사자 수는 3명 이하 시설이 전체 70.8%로

대체로 소수임을 알 수 있음.

• 임시직 중 상근직이나 시간제 고용도 비슷한 분포를 보임.

— 월평균 임금: 시설 정규직 종사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70-90만원 미만이 26.3%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이 25.9%, 50-75만원 이하는 24.8%를 차지하였음.

• 월 평균 임금 110만원 이상은 20.4%에 불과하여 일반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음(표 III-10 참조).

<표 III-10> 종사자 연봉액 비교

(단위: 명, 만원)

구분		표본수	평균 연봉액	표준편차
신고시설	일반사회복지사	5,455	1,671.00	696.79
미신고 시설	정규직	266	882.72	725.96
	임시상근직	64	773.04	736.02
	임시시간제	55	604.32	476.81

주: 일반사회복지사의 연봉액은 한국사회복지사(2000),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 p.58를 재구성함.

— 주 근무 형태: 근무형태는 '매일 거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음.

— 종사인력의 충분성: 시설의 종사인력에 대해서 총 73.9%가 종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하다는 응답은 4.6%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음(표 III-11 참조).

<표 III-11> 종사인력의 충분성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퍼센트
부 족	430	73.9
보 통	125	21.5
충 분	27	4.6
계	582	100.0

다. 자원봉사인력

— 자원봉사자수: 연 평균 자원봉사자 인원 50명 미만이 3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50명 이상 100명 미만도 14.7%였고, 56.9% 가량이 150명 미만의 자원봉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자원봉사 활동 영역: 자원봉사자들의 81.2%가 청소, 취사, 세탁 등의 노력봉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42.6%는 이미용 등의 기술봉사를 담당하고 있었음.
— 자원봉사자 충분성: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 총 54.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5.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음.

6. 신고 의향

가. 신고 의향

— 현재의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향은 62.8%가 있다고 하여 매우 높은 신고의향을 보였음(표 III-12 참조).

<표 III-12> 신고시설로 전향의향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신고 의향 없음	220	37.2
신고 의향 있음	371	62.8
계	591	100.0

나. 신고기피 이유

— 신고기피 이유로 시설이 '신고기준 미만'이어서(33.0%)가 가장 많았으며, 소규모 운영이 더 효과적이어서(24.9%), 그리고 신고 후 행정적 규제 및 간섭이 싫어서(14.2%)라는 이유도 지적하였음(표 III-13 참조).

• 따라서 신고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표 III-13> 신고시설로의 미전향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시설이 신고기준 미만이므로	69	33.0
신고 후 행정적 규제 및 간섭이 싫어서	29	13.9
신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와서	18	8.6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되므로	5	2.4
사회사업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16	7.7
소규모 운영이 더 효과적이어서	52	24.9
기 타	20	9.6
계	209	100.0

다. 신고시설로의 전향이 어려운 이유

—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원하나 전향이 어려운 이유로 67.6%가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가 힘들어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12.1%는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였음(표 III-14 참조).

<표 III-14> 신고시설로의 전향 곤난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213	67.6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	38	12.1
시설장이 상근하기 어려워서	2	0.6
지방자치단체가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9	2.9
신청절차가 까다로와서	11	3.5
기타	42	13.3
계	315	100.0

라. 신고기준에 대한 견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에 대하여 79.9%가 '높다'라고 응답하여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표 III-15 참조).

<표 III-15> 신고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너무 높다	180	31.7
높은 편이다	274	48.2
알맞다	76	13.4
낮은 편이다	30	5.3
매우 낮다	8	1.4
계	568	100.0

마. 미신고시설의 어려운 점

— 미신고 시설로서 어려운 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가 67.6%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13.8%)', 그리고 '후원받기 어렵다(11.0%)'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III-16 참조).

<표 III-16> 미신고 시설의 어려운 점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398	67.6
후원받기 어렵다	65	11.0
자원봉사자가 꺼린다	5	0.8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	81	13.8
기타	40	6.8
계	589	100.0

바. 미신고시설의 좋은 점

— 미신고 시설로서의 이점은 첫째, '생활인의 입퇴소가 용이하다(31.0%)', 둘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25.3%)', 셋째, '행정업무가 많지 않다(24.2%)'라는 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7. 타시설과의 관계

가.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여부

— 지역 내 다른 시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시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 '별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5.2%나 되어 약 40%의 응답자가 지역사회 내 유사기관과의 유대가 없었음.

나. 지역주민의 인식

— 지역주민이 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 약간 도움을 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6.0%로, 약 71%의 시설이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태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행정기관과의 관계

—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에 대해 약 79.6%(적극지원+소극지원)의 응답자는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무관심 17.1%, 시설정리를 권고 3.3%를 차지하고 있어 약 20%의 시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요망 분야

— 행정기관이 지원해 주는 분야는 행정적 편의가 27.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어 주부식·피복 등 물품지원 23.6%, 금전적 지원 19.7%의 순으로 나타났음. 즉 소수만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 가장 원하는 지원분야

— 행정기관에서의 가장 원하는 지원분야로 시설신축이 27.7%(166개소) 9.0%로 가장 높았고(표 III-17 참조). 이어 종사자 인건비 21.4%, 생계유지비 21.4%로 나타남. 시설 운영과 생활인의 생계유지 지원을 원하고 있었음.

<표 III-17> 가장 원하는 지원분야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시설 신축	166	27.7
시설 증개축	54	9.0
시설관리, 유지, 보수	72	12.0
종사자 인건비	128	21.4
생계유지비	128	21.4
교육비	15	2.5
의료비	11	1.8
기타	25	4.2
계	599	100.0

8. 미신고시설의 문제점

가. 재정의 열악성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최대의 문제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운영비를 자체부담하거나 후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는 재정문제임.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의 2000년도 한해 지출 평균은 약 8천1백여 만원 정도로 나타났음.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영세성은 재정조달의 한계에서 기인함. 이러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다른 문제점, 즉, 시설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프로그램 실행의 곤란 등으로 연계되어 미신고 시설 열악성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됨.

나. 시설 설비의 열악성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시설의 협소, 설비 미비, 편의시설 미비가 문제점으로 드러났음.

- 상당수의 미신고 시설들이 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원하고 있었음.

다. 프로그램 미비

— 재정조달의 한계는 시설설비의 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시설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수용보호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은 일시보호 및 수용보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라. 인력 부족

— 프로그램의 미비는 종사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6%가 미신고 시설에서 종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하다 응답한 경우는 단지 4.7%에 불과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재정적인 문제로 충분한 인력을 보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자 함. 그렇지만 자원봉사 인력도 충분치는 못한 상황임. 54.9%의 시설에서 자원봉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마. 혼합시설의 과다

— 실태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 중에는 혼합시설이 전체 미신고 시설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 장애인, 아동의 혼합시설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종류의 보호인이 함께 보호받는 상황임.

• 혼합시설은 단일 종류의 보호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됨.

바. 정보의 제한

— 사례조사 결과, 사회복지혜택을 위한 장애인등록에 대한 정보와 등록절차를 모르거나, 시설의 신고 기준을 모르거나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설도 상당수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 법적인 요건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고 시설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사. 타시설과의 연계성 미약

— 설문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의 사회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였는데, 타 시설이나 유관기관과의 '관계 없다'가 약 40%인 반면 '관계 있다'는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미신고 시설은 행정기관과의 연계조차 미약하여 행정기관의 지원과 관심대상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있음.

아. 시설에 대한 인식 문제

— 미신고 시설의 시설장들은 시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는다고 지적하였음.

• 미신고 시설은 불법시설이고 문제시설로 인식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도 받기 어렵고 자원봉사자가 꺼리고 있음.

•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설개방이 요구됨.

Ⅳ.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개선방안

1. 시설 양성화 및 재정적 지원

가. 신고시설로의 전환 방안 마련

—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고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현행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준관인시설'로 전환해야 함

- 2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을 완화함(개별복지법 개정). 이중 10인 미만의 시설은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시설로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만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도 포함시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보호하도록 함.
- 소규모 시설은 생활인에 필요한 기본설비인 방,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신고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함. 특히 의무실, 상담실, 조리실, 오락실 등의 세부기준은 완화하도록 함.
- 20인 이상 미신고 시설은 모두 준관인시설화 하여 완화된 기준에 시설의 구비요건이 맞추어질 때까지 지원하고, 시설이 기준에 충족되면 신고 시설로 편입시킴.

나. 생계비 지원

—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제도인 장애인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임.

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유능한 인력을 유치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게 됨.

- 특히 인력 중에서 취사원, 차량유지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2].
- 인력보강을 위해 복지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임.

2. 시설의 단일화 추진

— 조사결과 미신고 시설 중 제일 많은 33%가량은 혼합시설로 나타났음. 시설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특성을 갖는 대상자를 보호하게 되면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게 됨.

- 지역 내의 신고 및 미신고 시설과 연계하여 비슷한 연령 및 유형의 보호 대상자들은 유형에 맞는 시설로 연차적으로 전원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3. 프로그램 확충

가. 프로그램 개발

— 미신고 시설의 프로그램은 주로 일시보호 및 수용보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을 통한 생활인의 독립적 생활이라는 목적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함.

- 따라서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화 교육 등이 시급히 요청됨. 아울러 생활인을 위한 다양한 전문적인

2) 올해초에 개최되었던 정책간담회 결과로 주로 시설 종사자가 차량 및 취사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음.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수용인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경제활동 연령인 35-65세까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나. 종사자 교육 및 자격증 부여

— 조사결과 시설장은 사회복지 전공자가 드물었음.

-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 신고시설 종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양성 과정에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생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함.

4. 시설의 개선

가. 시설의 증개축

— 미신고 시설장들이 정부로부터 가장 원하는 지원은 시설의 신축에 있었음. 특히 몇몇 시설들은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음.

-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현 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통해서 생활인의 복지가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그린벨트지역에는 사회복지

시설 건축을 허가토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토록 함.

나. 편의시설의 구비

— 미신고 시설의 시설 구비 상태를 조사한 결과 거실, 조리실,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본 생활 외에 생활인이 자활하고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의 설비를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은 장애인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구비하도록 지원함.

5.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함.

• 미신고 시설의 실태를 면접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시설 운영의 동기가 순수한 '이웃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이라는 지적은 마치 불법 시설과 같은 낙인을 찍고 있음.

• 이러한 낙인이 없을 때 시설은 민간기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가 편견없이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임.

•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설의 양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6. 미신고 시설 발생 예방

— 향후 미신고시설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예방해야 할 것임.

• 수요자 측면에서 미신고 시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시설에의 입소기준이 엄격하여서 이거나, 지역에 입소할 시설이 없어서인 경우임.

• 일반시설의 입소기준을 낮추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시설을 확충함.
• 특히, 미신고 시설 중에서 장애인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만큼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시설을 증설할 때 장애인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임.

— 한편, 요보호대상이 계속 발생하는 다른 원인은 가족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므로, 빈곤가족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토록 함.
• 가족이 경제적 부양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함.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보충급여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7.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

— 미신고 시설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생활인의 상황 및 욕구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미신고 시설을 지원하고 양성화하기 이전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확한 개별적 상황을 파악해야 함.
• 아울러 생활인의 인구사회적학적 구성과 복지욕구,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을 점검하여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V. 결론

— 향후 신고시설로의 입소기준이 현재와 같은 한,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해체의 확산, 미혼모의 증가,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임.

— 소수의 미신고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설비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사회복지인력이 기피하며,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임.
-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개선은 취약계층의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미신고 시설을 제도권에 흡수하여 생활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임.

- 정부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한다는 전제하에 미신고 시설들을 법적 시설로 편입해야 하고, 앞으로 생기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통하여 미신고 시설의 양산을 방지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김미혜,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개선」, 『한국적 복지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김복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영모, 「시설보호 지원방안의 과제」, 『연구논문집』 제18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97.

김영모, 임유경, 「비인가 시설보호의 실태와 과제」, 『사회정책연구』 1997, 18: 1-69.

김인숙 외,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0.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변용찬,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의 과제」, 『서울사회복지포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1996.

변용찬외,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변용찬 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2001.

윤찬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책토론회 자료, 1997.

이영희 편저, 『사회복지시설행정』,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6.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홍익출판사, 1999.

이원석,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태수a, 「아동을 위한 소공동체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97 아동심포지움 자료집. 1997.

이태수b, 「개정 사회복지사성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책토론회 자료, 1997.

정무성,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대회 자료집, 1999.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1.

최해경, 「가톨릭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실태와 발전방향」,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8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pp.32-49

Goffman, E., *Asylums*, Penguin Books, 1961

Hasenfeld, Y. (ed.) *Human Services as Complex Organizations*, Sage, 1992

NASW, *Social Work Dictionary*, 1987.